

학생안전관리규정

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0.09.01

개정 : 2021.05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의 학생단체활동 및 교내 차량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과 대책 및 학생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은 본 대학교가 주최하는 교내·외 각종 학생 단체활동 및 교내 차량운행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담당부서) 학생단체활동 및 교내 차량운행은 입학학생취업팀이 담당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“학생단체활동” 이라 함은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(축제, 체육대회, 교내·외 다양한 행사 등)를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<개정 2021.12.01.>
2. “교내 차량운행” 이라 함은 교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(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 등) 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05.01., 2021.12.01.>

제5조(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) ① 학생단체활동 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입학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지도교수를 현장책임자로 한다.

③ 행사 1주일 전까지 단체활동 계획서(별지 서식)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반드시 입학학생취업팀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3.10.16.>

- ④ 현장책임자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, 사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5.01.>
- 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, 현장책임자는 지체없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⑥ 교내 차량운행의 총괄책임자는 총장으로 하며, 안전사고 발생 또는 지침 미준수자에 대해 입학학생취업팀은 내용을 접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한다. <신설 2021.05.01., 2023.10.16.>

제6조(학생단체활동시 준수사항) ① 교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05.01.>

- 1. 행사 참석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(성, 음주, 폭력 등) 실시
- 2.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,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
- 3.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05.01.>

- 1. 단체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
- 2. 행사 참석 대상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(성, 음주, 폭력 등) 실시
- 3. 행사에 동원되는 무대, 장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배상 책임 보험 가입
- 4. 숙박시설(장소)에 관한 사항 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가.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여부 확인

나.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인원 준수 여부 확인

다. 시설 내 안전잠금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

라.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안전점검을 실시 여부 확인

마. 사고발생시 학생들의 대피로 확보 여부 확인

바. 학생들에게 안내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유무 확인 <개정 2021.12.01.>

5.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가. 차량 보험가입 여부 확인(차량 보험증권)

나. 정기검사필 관련서류 및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 확인

다.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확인

라.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

마. 차량점검상태 확인(안전벨트 작동 여부, 소화기 비치 여부,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)

6. 행사(계약) 전 사전 답사 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

12.01.>

- 가.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 여부 확인
- 나.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가능 여부 확인
- 다.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및 소방안전 점검표 확인
- 라. 구조차량의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
- 7. 대학 측 주관 행사의 경우 교직원이 동행
- 8. 기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의2(교내운행차량의 준수사항) 교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자는 교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관련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05.01., 2021.12.01.>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비상연락망 <신설: 2020.09.01., 2023.10.16.>

□ 관내 활동 비상연락망

소속	구분	전화번호	비고
소방서	의림지 119 안전센터	043-641-7300	
	화산 119 안전센터	043-641-7310	
	봉양 119 안전센터	043-641-7340	
	제천 119 구조대	043-641-7350	
경찰서	성폭력	043-641-8334	
	상황실	043-641-8229	
병원·보건소	제천서울병원 응급실	043-643-2327	
	제천명지병원	043-640-8121	
	제천보건소 감염병관리과	043-641-33908	
대원대학교	입학학생취업팀	043-649-3331	팀장
		043-649-3338	계장
		043-649-33336	담당

※ 제천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시 현지 상황에 맞춰 소방서, 경찰서, 병원등의 연락처를 파악 후 활동을 실시하기 바람

[별표 2] 교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관련 안전지침 <신설: 2021.05.01.>

교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안전지침



교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안전지침

1. 목적 : 교내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과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.
2. 적용범위 : 학생, 교직원, 기타 구성원 등 교내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
3. 차량의 범위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, 제19호, 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차
가. 자동차 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, 이륜차 (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)

				
승용차	승합차	화물차	특수차	이륜차(125cc 이상)

나. 원동기장치자전거 :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



다. 개인형 이동장치 :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(전동 휠), 전기자전거 등

				
전동스쿠터	전동이륜평행차	전기자전거	전동외륜보드	전동이륜보드

라. 자전거



4. 안전운전 지침

가. 자동차

1. 교내 운행 시 반드시 제한속도 30km/h를 준수해야 한다.
2. 교내 운행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서는 안된다.
3. 교내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.
4. 주차 시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해야 하며, 갓길주차, 이중주차는 자제한다.
- 갓길주차, 이중주차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차주에게 있다.
5. 야간 운행 시 반드시 전조등을 점등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.

나.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

1.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교내 이륜차 주차장 이상 출입이 불가능하다.
2. 등교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(헬멧, 보호대 등)를 착용한 후 운행해야 하며, 정문 경비실옆 주차장에 주차 후 도보로 교내로 진입해야 한다.

다. 개인형 이동장치

1.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(헬멧, 보호대 등)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.
2. 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, 중앙선 침범, 휴대기기 조작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.
3. 교내 진입 시 제한속도 25km/h를 준수해야 한다.
4.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며, 건물내에서 보관 및 운행은 불가하다.
5. 개인형 이동장치는 1명만 탑승 가능하다.
6.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화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전용 충전시설(전기차 충전소 등)에서 충전을 해야 하며, 전용 충전시설 외 불법으로 교내에서 충전(건물내, 공공시설 등)은 불가하다. (강의실 내 충전 적발 시 전기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)

라. 자전거

1. 자전거 운행 시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(헬멧, 보호대 등)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한다.
2. 운전자는 반드시 음주운전, 중앙선 침범, 휴대기기 조작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.
3. 교내 진입 시 제한속도 25km/h를 준수해야 한다.
4.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하며, 건물내에서 보관 및 운행은 불가하다.

- 5. 기타사항 :** 본 지침 미준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, 대학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